

기안용지

분류기호 문서번호	도 7415- (전화번호)	전 결 규 정 조 항 전 결 사 항
처리기간		장
시행일자	표시제 175호	
보존년한	부시장	
보조 기 관	도시계획국장	형 번무담당관(고시안심사) 시민과장 문서관리계장 종합계획계장
	도시계획과장	
	가로계획계장	
기안책임자	이평재 74. 11. 12. 양규승	조
경유 수신 참조	각안참조	통 계
제 목	서울도시계획시설(화물자동차정류장) 위치 변경	
제1안	내부경계	
	1. 서울의 화물수송 체계의 확립과 도시교통소통의 원활을 기 하기 위하여 도심권내에 산재한 화물적금소를 통합하여 외곽지역으로 분산 이전방안을 수립하여 조선중 동북지역(경춘, 경의남면) 화물자동차 정류장 시설지를 서울특별시 종로구 궁정동 50번지 장의상의신정에 의거 결정한다.	
	. 본 시설지 결정시 토지소유자 한국양회 산업주식회사 대표 이사 이태국의 사용승락서(인감접부)가 첨부되어 시설결정 되었으나 시설결정된후 차무변제 특등으로 단초 사용승락(임지계약)이 무효로	
	되었으므로 화물자동차정류장 시설이 불가능하여 이전지에 용지확보 하여 위치변경 신청이 있어 논안 제16차 (74.11.8.) 당시 도시계획 위원회 심의에 부의하였던바 변경심의안미 회의록과같이 의거되었으	
	므로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동법제13조 의규정과 건설부고시 제122호 (73.4.4)의 권한위임사항에 따라 변경(위치변경)고시.코저합니다.	

0201-1-8A (갑)
1969. 11. 10 승인

190mm x 268mm (2급인쇄용지 60g/m²)
조 말 청 (1,000,000매 인쇄)

고시안심사 1974. 11. 28 제 165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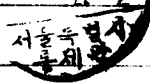
심자증 15582

제안 고시안
 서울특별시고시 제 호

서울도시계획시설(화물자동차정류장) 변경(위치변경)

1. 서울특별시고시 제151호(7.9.7)로 시설결정된 서울특별시 관내 도시계획시설(화물자동차정류장)은 다음과같이 변경(위치변경) 하였고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동법 제13조와 건설부 고시 제123호(73.4.4)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와 동대문구청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



1974. 11.

서울특별시장

가. 변경조서

구분	시설명	위치	면적	비고
기정	화물자동차정류장(동부)	동대문구 상봉동 164외 11필지	7,928㎡ (2,402.2평)	상업지역
변경	"	동대문구 상봉동 79-7외 2필지	8,853.9㎡ (2,683평)	"

* 별첨도 면표시와 가음(도면생략)
 도면은 서울특별시청 및 동대문구청에 보관함.

제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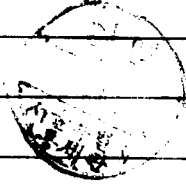
수신	건설부장관	발신	시장
제목	동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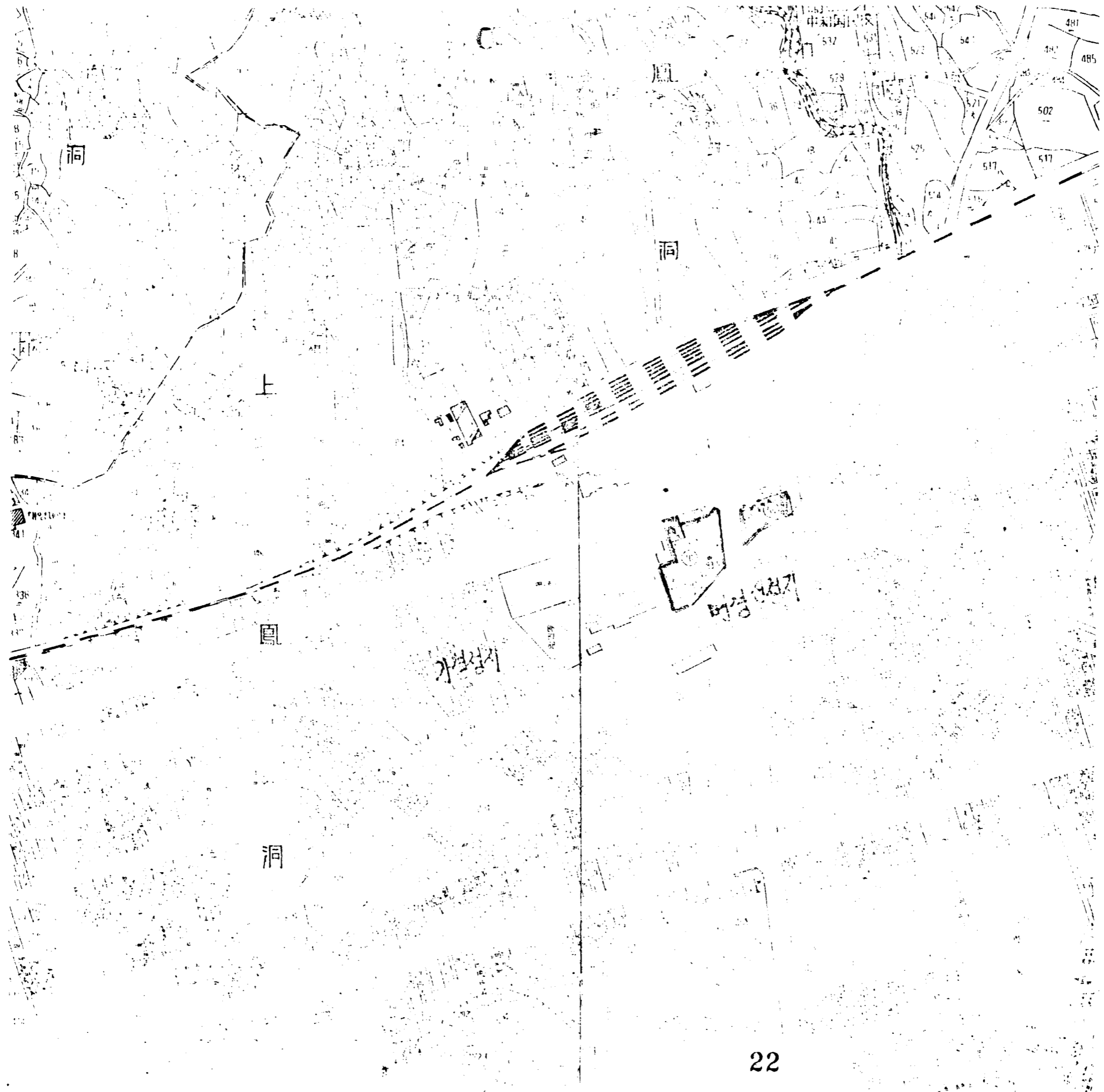
당시 관내 도시계획시설(화물자동차정류장)은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동법 제13조의 규정에 건설부 고시 제123호(73.4.4)의 권한위임 사항에 따라 변경고시본 사본 및 도면과 같이 고시하였기 보고합니다.

- 첨부 1. 고시본 사본 및 도면 1부
 2. 변경사유서 1부

자동차 정류장 위치변경 신청에 대하여 귀의대로 변경 고시문 사본
과 같이 견정되었기 통보하오니 사업시행에 자질언도록 하시기 바랍
니다.

첨부. 고시문 사본 1부. 끝.





'74. 11. 8.

도시계획위원회회의록

[제16차 회의]

서울특별시도시계획위원회

제16차 회의 요약

안건 1. 도시계획도로 (대 2-44) 변경

원안가결 통과.

안건 2. 도시계획도로 증설 (증 2-129) 로선 연장

소위원회를 구성 현장답사 검토후 재심의키로 가결

안건 3. 도시계획 시설 (화물자동차 정류장) 위치 변경

원안가결 통과

안건 4. 도로공원 신설 및 순환도로 (대 2-20) 일부변경

원안가결 통과

안건 5. 화포응지 시설결정

가. 증산국민학교

원안 가결 통과

나. 증제국민학교

원안 가결 통과

회 의 록

1. 일시. 74. 11. 8. 15:00
2. 장소 도시계획과장실
3. 안건.
 1. 도시계획도로 (대 2-44) 변경
 2. 도시계획도로 증설 (중 2-129) 로선 연장
 3. 도시계획시설 (복합자동차 정류장) 위치변경
 4. 도로공원신설 및 순환도로 (대 2-20)
일부 변경
 5. 학교용지 시설결정
 6. 시장용지 시설결정
 7. 도시계획응도지역 일부변경
 8. 도시계획 고도지구 일부변경
 9. 전기공급 시설결정
 10. 특정가구 정비지구 일부변경

안건 6. 시장용지 시설결정

원안 가결 통과

안건 7. 도시계획 응도지역 일부변경

부 결

안건 8. 도시계획 고도지구 일부변경

원안가결 통과

안건 9. 전기공급설비 시설결정

원안가결 통과

안건 10. 특정가구 정비지구 일부 변경

원안가결 통과

4. 참석위원

위원	강민주	위원	나상기
"	이원환	"	주종원
"	서영갑	"	김희섭
"	김준석	"	이상록

5. 기타 참석자

관사 (도시계획과장) 서기 (종합계획계장)
 이 가로계장, 권지영계장, 김재개발계장

6. 기록

이응섭

회 의 내 용

* 위원장 불참으로 강민주위원이 임시 회의를 진행을 맡음

강민주위원: 계획선언 (생략)

지난 제15차 회의에 대한 결과를 요약 보고하십시오

이가로제장: 제15차 회의 결과보고 강독 (생략)

강민주위원: 이상 보고에 대한 이의는 없으십니까 없으면

본회의를 개최하죠

위원 일동: 동 의

안건 1: 도시계획도로 (대2-44) 일부 변경

이가로제장: 제안설명 (생략)

강민주위원: 폭 30m 계획선은 그대로 두고 공사만 폭

15m로 할 수는 없죠

이가로제장: 이 지역 일대가 공원녹지 지역으로 사실상

통과 교통 역할을 할뿐이죠

서영갑위원 : 서울대 출입의 유일한 도로입니까

이가로제장 : 아닙니다 후문진입도로 뿐이죠

간 사 : 보충 설명 (생략)

서영갑위원 : 후문 연결도로 기능이군요

간 사 : 그렇습니다

이원환위원 : 폭 30m에서 15m로 줄일경우 남은 15m는
공원녹지로 류여지는데요 그리고 당초 30m로 책정
한데 대하여는

간 사 : 자동적으로 공원녹지로 환원조치되죠 그리고
이지역에 낙성대가 세워진 성역지역이 되
면서 주위 일대가 공원용지로 책정되었
기 때문이었죠

이원환위원 : 낙성대주변 성역지역에 대한 통과 관통도로
로서 여러 면에서 고려한테 좋은 현상은
못된다.

강민주위원 : 탄의의가 없으십니까 없으면 원안가결로
보고 다음안건을 심의하죠

위원 일동 : 동 의

안건2 ; 도시계획시설 (중2-129) 로선변장 일부변경

이가로계장 ; 제안설명 (생략)

강민주위원 ; 시 당국에서 문제점이 있다면 토지보상관계
분인가도

이가로계장 ; 보상관계도 있지만 막대한 사유재산의 피
해가 가기 때문입니다.

김준석위원 ; 구침전물 건축공정은

간 사 ; 거의 다 지어져 있습니다.

김준석위원 ; 이 부근 토지가 구침 전축분을 타고 상
당히 값이 올라간 것으로 보는데

이원환위원 ; 지난번 구침전물 신축당시 진입도로 일부
를 신설하는 것을 다룬적이 있는데 그때
다루어 졌어야 옳은 일이 아니냐 이제
또 신설한다는 것은 고려의 여지가 있지
않나

간 사 ; 보충설명 (성략)

서명감취권 ; 구하여 사유재산의 막대한 피해를 주면서
까지 도로를 개설해야만 할 필요가 없으
며 현재로서도 족하지 않나

간 사 ; 건축공사가 거의 다 되고보니 사실상 차
량 진입 및 통과교통등을 고려건대 필요
하게 된 것이죠

나상기취권 ; 토지에 대한 문제는

간 사 ; 보상을 하죠 다만 보상에 있어서는 현
싯가보다 낮게 책정됩니다만.

주종권취권 ; 현재 있는 건축물은

이가로계장 ; 새로 지축되는 건물은 2층이 됩니다

김준석취권 ; 현싯가로 보상한다면 몰라도 보상가격이
감정가격에 의해서라니 얼마가 될런지 모
르겠군요

나상기 위원 ; 신축구장에 대한 교통구실관계를 고려하여
마땅히 개설이 필요한 지역인 것마는 사
실이구요.

강민주 위원 ; 그럼 본건에 대하여는 현장을 답사하여
현재 사용하는 도로등을 검토하여 제삼의
도록 함이 좋겠구요.

간 사 ; 그럼 별도 소위원회를 구성 현장답사 검
토후 제삼의도록 결론짓죠.

위원장님 ; 동의

안건3 ; 도시계획시설(화물자동차정류장)위치변경

이가로계장 ; 제안설명 (생략)

간 사 ; 보충설명 (")

김준식 위원 ; 평수차이는

이가로계장 ; 오히려 200 정도 더 많죠

김희섭 위원 ; 위치상으로는 먼저 지역보다 훨씬 낡은 지역이구요

강민주위원 : 새로 시설결정될 경우 도로통과 교통등
방해가 안되는 지요

이가로계장 : 별지장은 없는줄 압니다

위원 일동 : 제안동의

안건 4 : 도로공원시설 및 순환도로 (비2-20) 일부 변경

이가로계장 : 제안설명 (생략)

관 사 : 보충설명 ()

나상기위원 : 마땅히 그렇게 조치해야만 하는 당연한 사실이며

위원 일동 : 제안동의

안건 5 : 학교용지 시설결정

가. 증산국민학교 (증산동 62-2 부근 약 10,000[㎡])

권지역계장 : 제안설명 (생략)

이천환위원 : 본인이 알기로는 이 지역은 현재 허허벌판인
줄 하는데 국민학교를 세운다니 아동들의 통학
문제가 고려되어야 할텐데

권지역계장 : 현재는 그렇지만 이 지역이 구획정리사업자주이며
사업이 완료되면 앞으로는 주택이 들어설 지역입니다

강민주위원 : 일반사유재산의 피해를 주지 않는다면 별이
의가 없지 않나

나상기위원 : 토지는 개인사유재산입니다

간 사 : 그렇습니다. 보상을 해주어야죠

위원 일동 : 제안 동의

나. 중계국민학교 (중계동 452부근 약 11,020㎡)

권지역계장 : 제안설명 (생략)

강민주위원 : 국민학교 시설용지에 피해되는 별의의 없
는줄 아니 다음 안전을 심의합시다

위원 일동 : 동의

안건6: 시장용지 시설결정

권지역계장 : 제안설명 (생략)

간 사 : 보충설명 (생략)

강민주위원 : 시장용지 시설결정에 대하여 그때 그때
하나 하나 심의할게 아니라 상정과의 협의하여

일괄 처리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한다

권지역계장 : 앞으로도 상정과의 협의하여 그런 방향으로 검토토록 하겠으며 본인이 역하여는 주변 여건을 고려하여 미관지구 저쪽분은 제외하고 기존시장에만 시설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일동 : 제안 동의

안건 7: 응도지역 일부변경

권지역계장 : 제안설명 (생략)

나상기위원 : 누가 핵지조성을 하였습니다

간 사 : 개인이 한것이죠 그러니까 68년도 이전에는 녹지지역이었던 것이 68년 이후에 봉주택단지조성시 주거지역으로 되어 69년도에 개인에게 허가되었는 것입니다 그러는 것이 71년도 다시 녹지지역으로

꼭여전 것이죠

주종원위원 : 상수도가 들어갔읍니까.

권지역계장 : 일부가 들어갔을 뿐입니다.

나상기위원 : 행정상의 미스로 인해 주거지역이 녹지지역으로 녹지지역이 다시 주거지역으로 바뀌는 현상이 이 지역뿐만 아니라 서울시에도 곳곳에 있는 것으로 안다. 이는 마땅히 일괄 정리해 주어야 될 줄 안다.

이원환위원 : 나위원 발언대로 본인이 알기로도 이런 모순된 지역이 여러군데 있는 줄 아는데, 이런 일로 인해 피해를 받고 있는 시민들을 고려해서라도 마땅히 시가 불합리한 사실들을 전반적으로 일괄조사를 해서 한거번에 심의조정토록 하길 바란다.

간 사 : 일괄 조사해서 검토하겠습니다.

강민주위원 : 그림 본건에 대하여는 일괄조사 검토후
처리기로 하고 일단 부결기로 하죠

위원 일동 : 동의

안건 8; 고도지구 일부변경

권지역계장 : 제안 설명 (생략)

간 사 : 보충 설명 (")

나상기위원 : 전기 공급 계획상 불가피한 사실은 이해가
간다

건물높이는 얼마나 되는가

간 사 : 서울운동장으로 부터의 건물규제에 대한 현
전주의 기술 검토 보고서 (차드 도면) 설명 (생
략)

위원 일동 : 제안 동의

안건 9; 전기공급설비시설결정

권지역계장 : 제안 설명 (생략)

간 사 : 보충설명 (생략)

나상기위원 : 다음 회의 때에는 직접 한전 관계담당자를 불러서 서울시에 대한 전기 수급계획 및 현황을 들었으면 한다.

간 사 : 그렇게 조치 하죠

위원 일동 : 제안 동의

안건 10; 특정가구 정비지구 일부변경

김재개발계장 : 제안설명 (생략)

간 사 : 보충설명 (")

나상기위원 : 누구의 소유냐

간 사 : 한전 소유지이죠

나상기위원 : 그렇다면 당초에 한전소유인줄 알면서 왜 특정가구 정비지구로 못했느냐

간 사 : 서울시로서는 학교 부지와 외인 부대 주둔지만을 건설부에 올렸으나 다만 건설부에서

추가로 묶었던 것이죠

이원환위원 : 한전 것을 넣었을 경우와 제외시켰을 경우
우에 대하여 전체 계획에 차질은 없는지요

간 사 : 특정 가구 정비 지구인 경우 단독 건립은
불가능하며 전체 계획에 준해야 하는데 우선
선 시급을 요하는 건축이기 때문에 차제에 해제
시키려는 것이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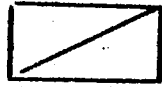
주종원위원 : 나중에 이 지역 마스타플랜을 세울 적에
이 지역에 맞게 세우는 밖에는 없지 않
느냐, 현시점에서 볼 때는

간 사 : 그렇습니다. 현의인주문부대가 이동되기 전
에는 건축 계획이 세워질 수 없죠

위원 일동 : 제안 동의

강민주위원 : 그럼 이상으로 제 18차 본회의를 마칩니다

————— 폐 회 —————



결 의 번 호	
결 의 년 월 일	1974. 11. 8 제 회

결 의 사항

도시계획시설(화물차동차 정류장) 위치변경

서울특별시도시계획위원회 결의안건

제 출 자	서울특별시
제 출 년 월 일	1974. 11. 8

~32~

3 도시계획시설 (화물자동차 정류장) 위치 변경

○ 의결 주문

화물자동차 정류장 위치변경에 관한 부의안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

가. 화물자동차 정류장 변경조서

구분	시설명	위치	면적	비고
기정	화물자동차 정류장 (동부)	동대문구 상봉동 164외 11필지	7,928 ^{m²} (24022평)	상업지역
변경	‘	동대문구 상봉동 79-1외 2필지	8,853.9 ^{m²} (2683평)	‘

○ 변경사유

가. 서울의 화물수송체계의 확립과 도심교통소통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도심권내 산재한 화물취급소를 통합하여 외곽지역으로 분산

이전 방안의 일환으로 동부 지역 (정촌 정의방면)
화물자동차 정류장 시설지를 73.9.7 차 서울시
고시 제151호로 결정 한바 있으나.

- 나. 당초 시설결정시 토지 사용승락에 의거 결정
하였으나 시설결정된후 토지가 채두번제 불능으로
당초 사용승락 (임차계약) 이 무효로 되었으며
로 화물자동차 정류장 시설이 불가능 하여 인접지에
용지 확보 하여 위치 변경 신청이 있는것으로 동일
상업 지역내 이므로 위치 변경규제 한